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u>제2조의2(원격교습의 범위) 법 제2조제1호의 “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”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 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u>	<u><삭 제></u>